

「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종합민원과장 김철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하며,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지방건축위원회(안 제8조제2항제1호)
 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1항제5호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규정 삭제
- 가설건축물(안 제13조제2항제7호)
 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11호 규정에 동일용도의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양어장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삭제
- 건축물의 공사감리(안 제15조의5)
  -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및 감리비용 기준을 신설

⇒ 감리비용 :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  
사회 평창군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고시

○ 공개 공지 등의 확보(안 제17조제1항1호)

-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
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.

○ 대지 안의 공지(안 제20조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고자  
함(여관 및 여인숙 ⇒ 일반숙박시설)

○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(안 제22조)

- 「건축법」 제60조제3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삭제

○ 건축협정의 체결, 지원 및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

(안 23조의2, 안 제23조의3, 안 23조의4)

- 지구단위계획구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 
지역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존치지역 및 조례로  
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협정 체결, 지원 및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 제외  
지역 조례 개정

○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및 감경(안 제24조제3항, 제4항)

- 「주차장법」 제32조(이행강제금) 일부개정으로 평창군 건축 조례에서 삭제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 15의 이행강제금의  
산정기준 제13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시가표준액의  
100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

○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(안 제24조의2)

- 「건축법」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 
기간"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 
기준으로 3년

○ 이행강제금의 감경(안 제24조의3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

100분의 60

○ 이행강제금의 감경(안 제24조의4)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”  
이란 100분의 50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장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5(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) 법 제25조제12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(이하 “건축사회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3천제곱미터”를 “5천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제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구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.

1.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
2.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

제23조의2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자”란 임차인(세입자)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
2.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

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2.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
3.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
4.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장에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3(건축협정에 관한 지원)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기간,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
2. 설계도서
3.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
4.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

제23조의4(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)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“건

축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.

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3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별표 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24조의2 중 “시정명령 기한 내로 한다”를 “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3(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)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.

제24조의4(이행강제금의 감경)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